

의안번호	2210781
의 퇴 인	김태년의원
회 답 일	2025. 9. 19.
추계번호	25B3207
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(안 제21조제3항)	100	—	—	—	—	100	20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2(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가치 평가 및 거래활성화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체계를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·활용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20조(데이터 품질관리 등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별도의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(제6항 신설)	재량규정
3	안 제21조(표준계약서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특성과 반복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으며, 이를 데이터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보급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조의2(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거래활성화) 신설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를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·활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 보완·활용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, 평가 방법 등의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음 ※ [참고자료 1] ‘현행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 개요’ 참조
2	안 제20조(데이터 품질관리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품질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체계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데이터의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데이터 품질인증 기준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음 ※ [참고자료 2] ‘현행 데이터의 품질인증 제도 개요’ 참조
3	안 제21조(표준계약서)	○	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·보급(안 제21조제3항)
 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특성과 반복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경우,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유사 사례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‘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’, ‘방송 분야 표준계약서(1~6종) 개선 방안 연구’, ‘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관련 양식 제·개정 연구’ 등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

[표 2] 유사 사례 주요 내용

실시기관	연도	용역명	사업예산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)	2023	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	9,000만원
문화체육관광부 (한국콘텐츠진흥원)	2024	방송 분야 표준계약서(1~6종) 개선 방안 연구	1억원
문화체육관광부	2024	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관련 양식 제·개정 연구	1억원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) 내용 참조
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거래 표준계약을 마련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	100	-	-	-	-	100	20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
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현행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 개요

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)

□ 법적 근거

- 현행법 제14조¹⁾

□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의 수립 내용

- ('23년, 체계 구축) 데이터 가치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유사 가치평가 방법론 및 지정 평가기관별 모델을 분석하여 평가 참고모델, 표준업무절차 등을 포함한 데이터 가치평가 안내서('24.7월 배포) 개발
- ('24년 ~, 고도화) 「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*」에 근거하여 수익접근법 기반의 데이터기여도법 평가모델 개발('24년)하고, 할인율·기여도 등 핵심 변수의 추정 방법 정교화 및 원가접근법 등 신규 평가방법론 연구를 수행 중('25.6월 ~)

* 제4조(평가 기법)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은 시장접근법, 수익접근법, 원가접근법에 해당함을 규정

□ 관련 예산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2024	2025	2026(안)
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(데이터 활용·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)	데이터 가치평가 제도 기획·운영 및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·고도화	280	287	287

- 1) 제14조(가치평가 지원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(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·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·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(이하 "평가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평가기관은 경영·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1. 평가 대상
 2. 평가 범위
 3. 평가 수수료
-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·지정절차,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참고자료 2] 현행 데이터의 품질인증 제도 개요

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)

□ 법적 근거

- 현행법 제20조²⁾

□ 데이터 품질인증 및 품질기준 수립 내용

- ('23년, 정형데이터 인증) 국제표준 ISO/IEC 25024(Measurement of data quality) 기반 정형데이터 인증 심사기준·방법을 마련하여 시행('23.11월 ~)
- ('24년 ~, 인증대상 확대)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비정형데이터(지도방식 학습데이터)* 및 관리체계** 인증 심사기준·방법을 개발하여 시행('24.7월 ~) 하고, LLM에 활용되는 텍스트 등 비지도방식 학습데이터 대상 인증 심사 기준 연구를 수행 중('25.6월 ~)

* ISO/IEC 5259-2 Artificial intelligence — Data quality for analytics and machine learning (ML) Part 2: Data quality measures

** ISO 8000-61 Data quality management: Process reference model / ISO 8000-62 Data quality management: Organizational process maturity assessment: Application of standards relating to process assessment

□ 관련 예산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2024	2025	2026(안)
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(데이터 활용·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)	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기획·운영 및 데이터 품질인증 기준 개발·고도화	320	320	320

- 2) 제20조(데이터 품질관리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,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,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